

의안번호	제 264 호
의 결 연 월 일	2008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장주식 의원 외 7인
발의연월일	2008년 9월 9일

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64
----------	-----

발의연월일 : 2008년 9월 일
 발 의 자 : 장주식·강태원·이필용
 조영재·연만흠·박재국
 김환동·이종호의원(8인)

개정이유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조문의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입법 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을 정리하고, 용어정의 신설,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기능 보완 등 그 동안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조문 정비 및 입법 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 정리(안 제1조).

- 1) 지방재정법(2005.8.4.) 및 같은 법 시행령(2005.12.30.)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14조를 제17조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를 제29조로 함.
- 2) “이 조례는 -----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를 조례의 제정 취지에 더욱 부합하도록 “이 조례는 ----- 사회

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공정하고 투명한 지원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로 문장을 정리하여 입법 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나. “사회단체보조금”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용어정의 신설(안 제2조제2호 신설).

- 1) “사회단체보조금”은 당해연도 세출예산 통계목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계상된 경비를 말한다.

다.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기능 보완(안 제11조)

- 1)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업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은 “사회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음.
- 2) 위원회 심의사항을 사업비 지원과 운영비 지원으로 구분하여 명확히 규정함.

참고자료

- 가. 관계법령 발췌 : 별첨

조례 제 호

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공정하고 투명한 지원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단체”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사회단체보조금”은 당해연도 세출예산 통계목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계상된 경비를 말한다.

제11조제1호 중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사회단체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 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 14조 및 동법시행령 제 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가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p>	<p>제 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 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9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공정하고 투명한 지원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p>
<p>제 2조(정의) 이 조례에 있어서 “사회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p>	<p>제 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단체”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사회단체보조금”은 당해연도 세출예산 통계목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계상된 경비를 말한다.
<p>제 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p>제 11조(위원회의 기능)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2. 사회단체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 4. -----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공공기관의 범위 등)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진 기관으로 한다.

②법 제17조제1항에서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이라 함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를 제외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등 모든 재정지출을 말한다.

③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정산과 사후평가 등 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